

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

의안 번호	277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
제출자 : 하남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: 41,417천원
 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에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여야 함.

3. 세부내용

출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번	출연대상	출연금액			증감사유	비고
		2024년	2023년	증감액		
1	한국지방세연구원	41,417	42,070	△653	'21년도 대비 '22년도 보통세 결산액 감소	

출연대상

- 설립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 : 2011. 2. 8.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- 기능 및 주요사업
 -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 실시

□ 출연금액 : 41,417천원 (2023년 42,070천원)

○ 전년대비 증감액 : △653천원

○ 증감사유 : 산출기초가 되는 '22년도 보통세 결산액이 '21년도 대비 감소

□ 출연근거

○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('22년도)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2적립

□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○ 지방세 연구·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

□ 검토의견

○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정한 지방세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여야 함.

관련 법령

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 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19. 12. 31.>
 1. 1만분의 1.2
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